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241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오승식(기소), 노영진(공판)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6. 26. 선고 2024고정2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여동생이 다니는 학교를 언급하는 등 야간에 채권 추심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원심은 위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사생활 평온을 침해한 정도, 피고인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그 형을 변경하여야 할 별다른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덕식 _____

 판사 김배현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8

판사 정현서 _____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4고정2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오승식(기소), 김소영(공판)
판 결 선 고 2024. 6.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 B으로부터 C에 대한 400만 원 상당의 금전대여 채권을 양도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3. 7. 18. 2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의 아들 D에게 전화하여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인데 연락이 되지 않아 전화했다. 너의 여동생인 E의 친구 삼촌이다. 네 아버지가 돈을 갚지 않아 네 여동생이 다니는 중학교에 찾아가 담임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으니 너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연락을 하라고 해라.", "D씨 부산 살죠? D씨 친구들도 다 알아요. 성주 언제 와요. 성주 오면 나 한 번 볼까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21:43경 위 D에게 '3일 기다릴꺼니까 전화하라고 해요. 아님 학교 찾아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C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위 D의 여동생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거나, 위 D과 만나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¹⁾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D에게 송신한 문자메시지를 D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 D 통화시 수사관이 메모한 내용,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검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날 밀접한 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이를 반복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반복적으로' 문구를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직권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8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 감액함]

판사 문현정 _____